

신구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p>제 5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p> <p>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한다.</p> <p>② 해당 통화를 현찰로 지급하거나 미 달러화 이외의 외화현찰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외화현찰수수료(지급시점에 영업점 고시)를 징수한다. 단, 동종의 외화현찰입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p> <p>③ 원화대가 매매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동종표시 외국환으로 대체되는 경우로써 입금당일 출금의 경우에는 대체료(지급시점에 영업점 고시)를 징수한다. 단, 수출입대금과 관련한 경우에는 입금당일 출금하더라도 대체료는 징수하지 않는다.</p> <p>④ 전월 평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음의 값)인 통화의 예금의 경우, 은행은 계좌유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 수수료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해당일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최종 잔액에 대하여 사전 공지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 수수료율은 해당 통화의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p>	<p>제 5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전월 평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음의 값)인 통화의 예금의 경우, 은행은 계좌유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 수수료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해당일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최종 잔액에 대하여 사전 공지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 수수료율은 해당 통화의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p>	계좌유지수수료 변경 관련 거래처 통지에 대한 권고사항 반영

<p>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율은 한국씨티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변경된 날로부터 적용된다.</p> <p>⑤ 전항의 수수료는 달리 약정하지 않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원금에서 차감되며, 수수료 산정 기간은 전월 수수료 납부일부터 당월 수수료 납부 전일까지로(초일 및 말일 산입) 한다. 단, 수수료 차감 전 인출요청 또는 계좌해지 시 그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 합계액과 인출요청액수의 합이 예금잔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일을 수수료 계산기간에 산입한다. 계좌해지 시 수수료는 원화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시 적용할 환율은 납부시점의 기준환율로 한다.</p> <p>⑥ 이용자는 제②항과 제③항의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기본약관의 제 9조 약관의 변경 사항을 준용합니다.</p>	<p>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율은 한국씨티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변경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해당 통화의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통화의 수수료 부과대상 거래처에게 변경 즉시 개별통지한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 좌동</p> <p>⑥ 좌동</p>		
	<p>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p>	<p>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문구 삽입</p>	